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항목 변경과 평생교육 시설 이용자의 배상책임 보장을 상향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학교평생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했으며,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에 적합하도록 평생교육기관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밖에 학교 평생교육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학교시설 관리 및 운영의 근거와 학교평생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